

2025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원사업계획

「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 2025년 농산물 유통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. 22.

세종특별자치시장

1. 지원 개요

- 가. 사업명 :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
- 나. 지원규모 : 금805,750,000원(금팔억오백칠십오만원)
- 다. 사업기간 : 2025. 1.~ 12.
- 라. 사업목적 : 지역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유통 경쟁력 확보
- 마. 사업내용

공모분야	대상 사업	비고
농산물 유통분야 지원	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	사업별추진계획 첨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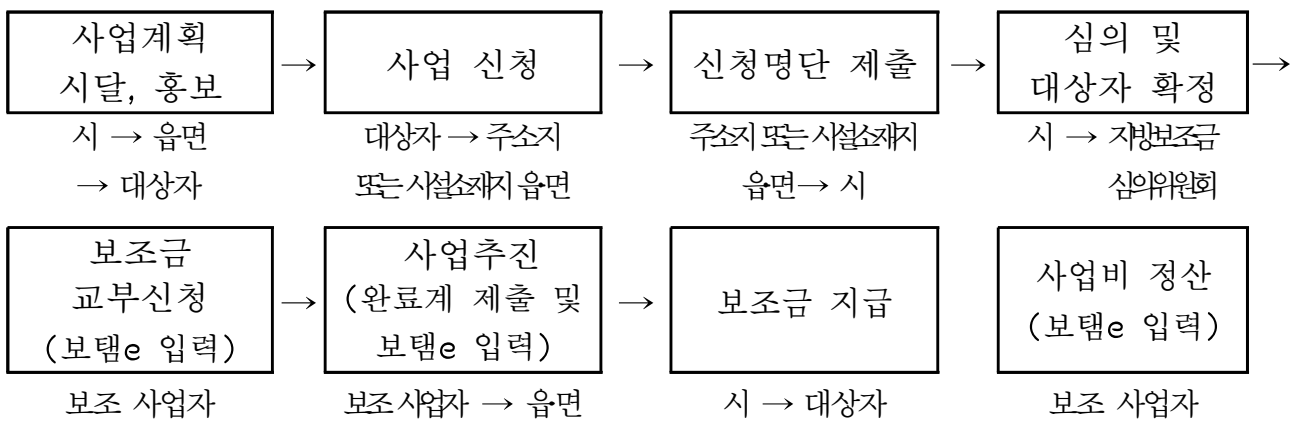
2. 지원 대상

- 가. 지원 대상
 - 세종특별자치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(생산자 단체 등)
- 나. 지원 제외 대상
 - 동일단체의 유사·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·사업
 -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
 -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
-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(주관 등)하는 행사
-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
-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(기금포함)사업에 중복 신청 하거나 선정된 경우

3. 지원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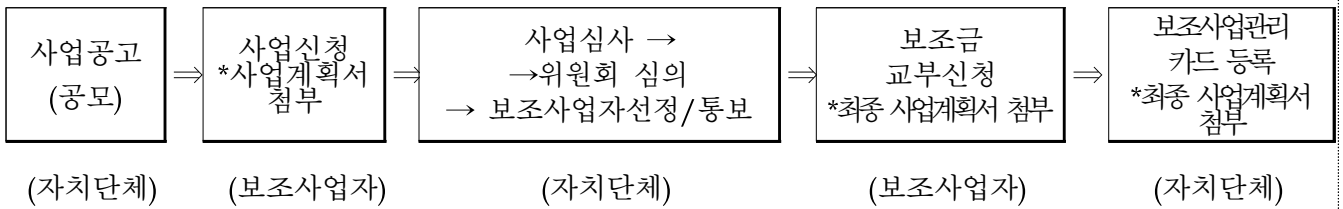
4. 지원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1. 22. ~ 2025. 2. 12.
 - ※ 대상사업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.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.
- 신청장소 :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(사업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음)
- 신청방법 : 읍면에 직접방문 제출(사업에 따라 신청서 제출처 상이)
 - ※ 세부사업 지원계획(신청서 포함)은 세종특별자치시 각 읍·면·동으로 시달

5.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

- 심의기구 :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
- 심의기준 :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, 타당성, 적법성 등 종합 고려
- 결과통보 : 사업선정 후 해당 읍면에 개별(공문) 통보

< 유 의 사 항 >



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)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기자본 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사항)
- 지방보조금 관리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: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(자부담 포함)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(농협 시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)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2. 지방보조사업의 수행

-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
-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보조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3.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

3.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10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부서에 신청(분산 신청시 불인정)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지방보조금 관리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)에 따르며,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**우리농산물유통과 농업유통담당(☎300-2522~6)**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